1. 각 당사자의 수권 대표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 외에, 본 제품 및 서비스 매매 일반 약관("본 약관")은, 기타 일반 약관을 제외하고 매도인(아래 정의됨)으로부터 Ahlstrom Corporation 또는 그 계열사(아래 정의됨)가 구매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본 약관은 매수인 사이트(www.ahlstrom.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약관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 "매수인"은 Ahlstrom Corporation, 및/또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여하한 그 계열사를 의미한다.

   (ii) "계열사"는 직·간접적으로 Ahlstrom Corporation 을 지배하거나 또는 Ahlstrom Corporation 의 지배를 받거나 이와 공동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회사를 의미한다. 지배는 소유권, 의결권 신탁(voting trust), 계약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경영 및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iii) "매도인"은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매도인을 의미한다.

2. 다음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i)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발주서("발주서")를 매도인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 (ii) 매도인이 발주서에 대한 이행을 개시한 경우, 또는 (iii) 매도인이 발주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에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기타 행동을 취하는 경우. 모든 발주서는 본 약관 및 발주서에 규정된 조건만이 적용되며 이에 제한된다. 여하한 발주서가 매도인의 사전 제안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러한 승인은 발주서 및 본 약관에 기재된 명시적인 조건에 제한된다. 단, 발주서에 제품 또는 서비스 내역, 물량, 가격 또는 배송일정에 대한 조건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경우가 아닌 한, 당해 발주서는 매도인의 제안에 대한 거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의 발주 확인서가 발주서 및/또는 본 약관과 다른 내용인 경우, 이는 신규 제안에 해당하며, 매수인의 수권 대표자가 서면으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상기 제안은 거절된다.

3.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발주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최대금액에 해당한다. 발주서에 달리 명시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대금은 포장, 용기, 보험 및 운송 비용을 포함한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한다. 판매, 사용 또는 제조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모든 세금은 매도인의 청구서(invoice)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4. 매수인은 합리적인 서면 통지에 따라 수시로 포장, 검수, 운송지, 사양, 디자인, 물량 및 배송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변경이 가격 또는 기타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발주서 수정을 위한 서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수정 요청은 변경에 대한 통지 수령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발주서에 명시된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은 발주서에 기재된 통화로 이루어진다. 모든 지급 및 현금할인 기간은 (i) 발주된 상품의 인도 일자 내지 발주된 서비스의 이행 일자, 또는 (ii) 발주서 조건에 따라 정확하고 적절하게 작성된 청구서의 수령일 중 더 늦게 도래하는 일자로부터 산정된다. 지급이 적시에 이행되었는지 또는 할인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매수인의 수표(check) 또는 송금지시서(transfer order)의 소인 일자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매도인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 시, 매수인은 발주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여하한 부분에서 발주서 또는 본 약관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일체 손해금액, 발주서에 따른 거래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그 밖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6. 발주서에 명시된 인도 일정의 준수는 본건 거래의 중요 요소이다. 매도인이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발주된 제품 또는 서비스 일체에 대하여 인도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인도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 3 자로부터 구입하고 매도인에게 여하한 발생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매도인이 여하한 사유로 발주된 제품 또는 서비스 일체에 대하여 인도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안된 인도 일정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발주서상의 총 물량에서 인도되지 아니한 물량을 제외하여 총 물량을 감축하고, 이에 비례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 내지 감축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발주서에 명시된 인도 일자 이전에 인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매수인은 발주서에 지정된 물량보다 많거나 적은 선적분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7. 본 약관 또는 발주서에 명시적으로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송한 제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멸실 위험은 제품의 인도 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수인 및 매도인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 및 대금 조건은 DDP 매수인의 공장 또는 매수인이 발주서로 지정한 기타 장소로 한다(incoterms 최신규정에 따름).

8. 매도인은 산업기준 및 제품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발주된 제품이 취급, 운송 및 보관 환경을 적절하게 견딜 수 있도록 제품을 포장한다. 매수인의 발주서 번호를 표시한 항목별 포장내역서는 반드시 각 선적분에 동봉되어야 한다. 포장내역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청구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매수인의 과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포장내역서가 동봉되지 않은 모든 선적분에 대한 매수인의 수량산정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9. 매수인은 제조기간을 포함하여 시간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발주된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검수 및 검사하고, 여하한 사전 조사 내지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공장에서 최종 검수 및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단, 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매수인의 여하한 지급, 검사, 검수, 검토 내지 승인으로 인해 매도인이 본 약관 또는 여하한 발주서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10. 매도인은 모든 상품 및 서비스는 디자인, 기술 및 재료에 결함이 없으며 해당 사양, 도면 및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견본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의도한 목적에 적절하고 충분하게 부합하고, 판매적합하며, 관련 산업의 최선의 관행에 따라 이행되었음을 명시적으로 보증한다. 이러한 보증은 모든 기타 보증에 더하여 매도인의 서비스 보증 일체와 함께 명시적, 묵시적 그리고 법정의 보증에 해당하며 매수인, 그의 승계인, 매수인의 양수인 및 고객에게 유효하다. 제품 내지 서비스에 대한 지급, 검수, 검사 또는 수령은 보증위반에 대한 면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1. 보증위반의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에 대한 자신의 청구권을 유보하고, 크레딧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반환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만족할만한 정도로 이를 즉시 수정 내지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본 약관에 따른 모든 반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기술이나 품질에 결함이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내지 여하한 기타 보증 위반으로 인한 대인 또는 대물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매수인, 그의 승계인 및 양수인을 면책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12.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화재, 폭발, 사고, 파업, 직장 폐쇄, 홍수, 가뭄, 통상금지, 전쟁(선포여부를 불문), 폭동, 불가항력, 테러행위, 여하한 정부당국의 조치, 또는 영향을 받은 해당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여하한 기타 우발상황, 지연, 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결과로 계약(본 약관 포함)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이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도급 계약자의 지연 및 기타 불이행은 그러한 지연 및 불이행이 본 약관에 규정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상황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불가항력으로 간주된다. 상기 사유로 면책을 청구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연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3.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 선택적으로 매수인이 발주한 여하한 발주서 또는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a) (i) 매도인의 지급불능, (ii) 매도인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iii) 채권자들을 이익을 위한 매도인의 재산양도, 또는 (iv)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매도인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매수인이 보통법 또는 형평법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여하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여하한 책임 없이; 또는 b) a)에 명시된 상황 또는 채무불이행 없이, 언제든지 매수인이 해지일자까지

발주서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범위의 비용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14. 발주서에 따른 작업이 매수인의 구내에서 이행되는 경우 매도인은 (i) 법률 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여하한 안전 관례를 준수하고, (ii) 상해 또는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대인상해 또는 대물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매수인을 면책 및 보호하도록 한다.

15. 도면, 사양, 도판, 정보 또는 매수인이 제공하는 유사한 항목을 포함하되 매도인은 이를 발주서의 이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기밀로 유지한다. 처리, 수리 또는 다른 사유로 매수인이 제공한 모든 자재, 설비 및 기타 제품은 매수인의 자산으로 존속한다. 매도인은 작업의 종료 시 모든 해당 품목들을 온전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반환하거나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한다.

16. 매도인은 운영 및 매수인에 대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허가, 라이센스, 등록 및 신고 일체를 유지한다. 매도인은 매도인, 그의 계열사,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하도급업체, 컨설턴트 및 대표자가 (a) 매수인, 매도인, 일방 당사자의 사업 및 본 약관 및/또는 여하한 발주서와 관계된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반부패 (예: 영국 2010 년 뇌물법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경쟁, 무역규제, 환경 (예: 미국 레이시법 16 U.S.C. 3371 및 유럽규칙 995/2010), 운송, 안전, 보건 (예: 유럽규칙 1907/2006 REACH 및 TSCA 로 알려진 미국화학물질관리법), 개인정보보호 (예: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 (EU 2016/679)), 세관 및 고용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수시로 수정될 수 있는 해당 법률 및 규정, 그리고 (b) 매수인 사이트(http://www.ahlstrom.com)에 게재된 매수인의 공급자 행동강령과 일치하는 사업 규준을 준수하여 본 약관 및 여하한 발주서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진술 및 보증한다. 매도인은 법령준수의 목적에서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문서 및/또는 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즉시 제공한다.

17. 매도인은 (i) 매수인의 개인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ii) 자체 비용으로 매수인의 개인 데이터를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기술 및 조직 조치를 취하며; (iii)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또는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요청할 시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즉각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iv) 매도인이 매수인의 개인정보 유지 또는 보관에 대한 침해 또는 위반되는 그 어떠한 손실, 무단 액세스에 대한 발견을 매수인에게 지연 없이 합리적이고 상세하게 자료 유출 통지를 서면으로 제공하며; (v) 개인정보를 (a) 매수인의 요청, 또는 (b)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수인의 개인 정보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개인 정보를 반환 또는 매수인의 요청 시 개인 정보를 파기 시켜야 하며; (vi)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위임한 제 3 자의 감사원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감사 또는 검수를 허용하고 기여해야 한다.

18. 매도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요하는 여하한 제품의 선적 이전 또는 선적 시 매수인에게 완전하게 작성된 현행 MSDS 를 교부한다. 매도인은 여하한 발주서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부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보험사로부터 적절한 종업원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에 가입한다. 매도인은 요청 시 해당 보험이 매수인이 승인할 만한 보험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보험사의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19.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발생시킨 폐기물이 존재하는 경우, 매도인은 폐기물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 및 제거한다. 해당 규정에 따른 소유권, 위험 및 책임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점에 매도인에게 이전된다.

20.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판매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매수인 또는 그의 고객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여하한 특허, 저작권, 상표 또는 제 3 자의 여하한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발주서에 따라 제공된 여하한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재판매가 여하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 3 자의 주장으로 인한 손해, 위약금, 비용, 경비 및 일실이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매수인 및 그 고객을 면책하고 보호하며, 통지 받은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주장에 대한 여하한 소송 또는 청구를 변호한다. 당사자들간에 개별

약정으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은, 매수인의 생산 과정에서 발주된 여하한 상품, 매수인의 완제품 및 매수인의 생산 과정 또는 매수인에 대한 서비스이행에 있어 상품의 검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또는 일방 당사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응용저작물이나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한 여하한 신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며, 매도인은 매수인과 협조하여 본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매수인이 요청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21.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발주서 또는 발주서에 따라 체결된 여하한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는 양도는 매수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무효가 된다. 하도급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도인은 하도급업체의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여하한 자신의 계열사 또는 합병에 따른 사업 승계인에게, 또는 매수인의 실질적인 모든 사업 자산을 인수하는 여하한 당사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22. 매수인의 본 계약에 따른 선택권 행사 또는 어떠한 권리의 불행사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에 의한 여하한 후속 불이행, 지연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3. 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계약기간 이후 5 년 동안 매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기밀정보 및 영업기밀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전술한 기밀정보 또는 영업기밀을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밀정보”란 기술 및 전문적 정보, 전문지식, 경험, 노하우, 발명, 견본, 데이터, 지시, 상품 데이터, 기술, 공정, 도면, 사양, 재정 정보 및 기타 정보로서 기밀로 표시 내지 통지되거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기밀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항의 의무는 매도인이 서면으로 다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밀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매수인으로부터 최초 수령하기 이전 보유하고 있었던 정보 및/또는 (ii) 본 약관 일자 또는 이후 본 약관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 및/또는 (iii) 타인에 대한 공개가 허용된 상황에서 제 3 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매수인의 기밀정보 또는 영업기밀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라이센스도 본 약관에 의하여 명시 내지 묵시적으로도 매도인에게 허여되거나 양도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정보공개가 법률 또는 관련 증권시장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의 한도에서 매도인이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4.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매수인과의 거래를 참고목적으로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본 약관 및 본 약관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매를 위한 계약을 구성하는 여하한 기타 조건은 매수인 소재지의 법률에 따라서 규율되고 해석되며, 법률의 저촉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6. 본 약관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는 미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분쟁의 경우 미국 상사중재협회의 상업중재규칙(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이 적용되며 그 밖의 모든 경우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규칙이 적용된다. 중재절차는 해당 규칙에 따라 임명된 1 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해 영어로 진행되며 중재지는 매수인의 소재지로 한다.

27. 본 약관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본 약관의 여하한 조항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28. 매수인 및 매도인의 수권 대표자가 적법하게 서명한 특정 서면 계약을 제외하고, 수락된 발주서, 본 약관 및 본 약관에 명시된 여하한 문서는 본 약관에 명시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